

제5기('23~'26)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(안) 보고

의 안 번 호	534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11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2026년 연차별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립근거: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

-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*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

※ 제5기: 2023년 ~ 2026년

나. 사업목표

-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단위의 계획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

다. 주요내용

- 4년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

라. 향후계획: 2025. 11월 말 서울시 제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빌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규정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(약칭: 사회보장급여법)

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

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

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역사회보장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7. 3. 21.>

②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해당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· 군 · 구 의회의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③ 시 · 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 · 군 ·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· 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3. 21.>

⑤ 시 ·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 · 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 · 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3. 21., 2021. 7. 27.>

⑥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(이하 “지역사회보장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 ·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3. 21.>